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의료원 설립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69호)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광석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지방의료원 설립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3

I. 개요

1. 전진속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6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전진속의원 등 24인
- (2) 제 안 일 : 2024. 7. 18.
- (3) 회 부 일 : 2024. 7. 1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 지방의료원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료원을 신축·이전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상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의정갈등 장기화로 “의료는 공공재”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대두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체계 여건과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적 필요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의 대

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방 공공의료체계를
보완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단서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지방의료원 설립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가 차원의 정책적 필요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설립 및 등기) ① ~ ③ (생략)	제4조(설립 및 등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u>이 경우 검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u>	④ ----- ----- ----- ----- -----, <u><후단 삭제> 다만,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적 필요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u>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설립 등기, 분원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	⑥ ----- -----, 변경등기 및 제4항에 따른 검토의

방의료원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법·절차 등에----- -----.
-----------------------------------	-------------------------

나. 검토의견

-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국가 재정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기 위하여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의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을 분석하여 타당성, 대안,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을 조사하는 제도로써,

「국가재정법」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지능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2.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복원사업
3.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율 증진을 위한 단순 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③·④ (생략)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생략)

□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적 필요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체계 여건과 기

반을 더욱 강화하려는 취지라 하겠음.

- 다만, 예비타당성제도의 취지와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예비타당성조사는 제한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그 면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데,

개정안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적 필요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라는 요건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제10호 나목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점과 비교하면 정책적 필요 유무의 판단 주체나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 또한,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라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고, 최근 서부산의료원, 대전의료원, 경남의료원 진주병원 건립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례¹⁾도 있으므로, 별도 조항 신설 필요성은 그 입법이 향후 다른 분야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는 등 면밀한 추가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하며,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됨.

정부가 경제성 외에도 공공의료, 지방의료원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예비타당성조사 평가기준을 개선*한('21.11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감염병 대응, 의료취약계층 지원 등 특수평가항목(정책성) 신설, 지역보건사업 추진효과, 감염병 편익 등 경제성편익 발굴·추가

□ (기획재정부) 국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시각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통일성 제고 등을 위해, 개별법보다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국가재정법」 체계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지방의료원 설립 관련 불특정 사업에 대한 포괄적·항구적인 예타 면제는 예타 제도의 형해화 초래 및 유사사례 등으로의 법제화 파급 가능성 등을 고려시 신중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9